

● 제33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2765)**

2025.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65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김영옥 의원(찬성 20명)
나. 제출일 : 2025년 5월 26일
다. 회부일 : 2025년 5월 26일

2. 제안이유

- 가. 종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인일자리법」)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정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정비함. (안 제2조제2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호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II.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법적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 동 조례개정안은 조례 제2조2호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정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일자리법」 제9조로 변경하여,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2.-----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말한다..

- 2023년 10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인 「노인복지법」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제23조의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품 우선구매(제23조의3)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 종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일자리 관련 조항들이 「노인일자리법」 제9조로 이관되어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상위법 조문 또한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인일자리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제정]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23년 10월 신규 제정된 「노인일자리법」 제9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규정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적 근거를 조례 상 정의의 근거 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재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은 229개소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이 61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종류, 대상 및 활동내용〉

유형	일자리수	참여대상	참여기간	근무시간/ 임금	활동내용 (예시)
노인공익 활동지원	69,200개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	평균11개월	월30시간/ 월29만원	노노케어, 학교급식, 스쿨존 교통지원
노인역량 활용	16,350개	65세이상 (일부 60세)	10개월	월60시간/ 월63.4만원	보육·돌봄·청소년시 설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동체 사업단	7,148개	60세이상	연중	사업별 상이	식품, 공산품제조, 카페, 택배
취업 지원	2,503개	60세이상	연중	사업별 상이	민간일자리 알선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현황〉

(‘25.2월 기준, 단위 : 개소)

수 행 기관수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자치구	노인 복지센터	기타
231	21	26	37	61	22	34	30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별 현황〉

(’25. 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시니어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종합복 지관	자치구	종합사회복 지관	비영리단체 등 기타	소규모노인 복지센터
합계	83,476	26,307	16,003	12,179	11,680	8,883	3,879	4,545
노인공익활동 사업	소계	62,872	13,946	13,193	9,990	11,194	8,176	4,154
	노노케어	8,530	710	610	2,413	90	2,326	1,354
	취약계층지원	234	38	125	22	-	-	49
	공공시설봉사	53,727	13,110	12,415	7,385	11,104	5,850	2,686
	경륜전수봉사	381	88	43	170	-	15	65
노인역량활용사업	14,278	7,874	2,057	1,691	486	618	1,171	381
공동체사업단	5,849	4,149	753	438	-	89	410	10
취업 지원	477	338	-	60	-	-	79	-

※ 집행부 의견 : 원안가결

-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제2조(정의)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종전에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일자리법」로 이관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개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제1조의 정의 규정에서도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노인복지법」만을 반영하고 있는 점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진영	02-2180-8140